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9월 18일 00시 15분



목차

목차	2
선정대리인 제도	3
지방자치단체 「선정 대리인 제도」 운영	3
도입배경	3
주요내용	3
업무처리절차	3

지방세종합안내	납세자보호관 제도	납세자권리현장	지방세365예약상담
마을세무사 상담	선정대리인 제도		

지방자치단체 「선정 대리인 제도」 운영

📌 도입배경

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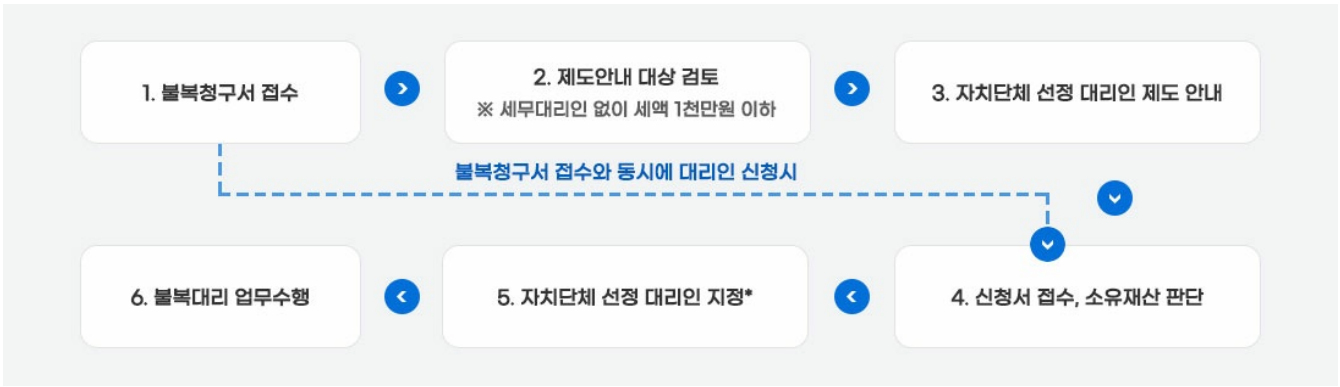
※ 국세는 '14. 3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(과세전적부심사는 '20년부터 적용)

📌 주요내용

- (개요)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(「선정대리인」)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*를 무료로 대리('20.3.2.시행)
 > * 신청대상 불복청구 : 과세전적부심사청구, 이의신청
- (지원대상)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

구분	내용	
선정대리인	세무경력 3년이상인 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 *임기2년	
청구인	종합소득금액	5천만원 이하 *배우자 포함
	소유재산가액	5억원 이하(부동산·회원권·승용차) *배우자 포함 - 평가방법 : 지방세법(제4조) 상 시가 표준액
	청구·신청세액	1천만원 이하
	신청불가 세목	담배소비세, 지방소비세, 레저세는 신청불가
	법인 제외	법인은 신청불가, 개인만 가능
	고액·상습 체납자 제외	출국금지대상* 및 명단공개대상**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·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
신청 및 지정절차	청구·신청인	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
	자치단체	요건충족여부 검토 → 대리인 선정 →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
대리인 위촉·관리	도지사	대리인 통합 위촉·관리, 시군 대리인 지정
	시장, 군수	도지사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

📌 업무처리절차



*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·통지

 [여수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hwp](#)

Yeosu Web Contents

